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위원회 개정사항 수용 -

수출입 물품을 관세율표상에 적정하게 품목분류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HS해설서의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HS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 내용을 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이유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WCO 제69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II. 주요 개정내용

#### 1.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과의 불일치 및 호·소호의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 수정
- 오타·누락 문구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 2. HS품목분류의견서(WCO 제69차 HS위원회 결정)

WCO 제69차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HS품목분류 의견서에 아래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니코틴 함유제품(제2403호 및 제2404호), 피부 검용 샴푸(제3305호), 플라스틱 옷걸이(제3924호), 타이어(제4011호) 등 29개 품목  
\*상세 내용 붙임4 참조

### III. 의견제출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042-481-7641
- 제출기한 : 2023.01.09.(월)
- 제출방법 : 이메일(j0620@korea.kr)

##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 [붙임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붙임3] HS해설서\_신구대조표
- [붙임4]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문(신규)

## | Contact



김승옥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유호성 팀장

T 070-4353-1522  
E hsyou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